

나날요양원 장기요양급여·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■ 입소계약(구비서류)

1. 장기요양등급 판정자
 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 -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2. 감염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
3. 주민등록증 사본 1부 (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)
 - ※ 처방전 등 추가서류는 입소시 제출합니다.

■ 입소정원

구 분	정 원	침실현황		
		2인실	3인실	4인실
계	89명	3실	1실	20실

■ 이용계약

1. 계약기간: 장기요양등급 판정 유효기간
2. 요양원 의무: 입소자의 건강관리, 입소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, 표준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, 식사제공, 생활상담 및 생활편익 제공,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,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3. 입소자 의무: 이용료 납부,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,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요양원에 통보, 기타 시설이용규칙 준수
4. 보호자 의무: 입소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 제공, 입소자의 이용료 등 입소비용부담,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요양원에 통보,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및 요양원에 통보,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
5. 시설의 계약해제
 -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
 -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
 -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어르신 및 보호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
 -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
 - 건물,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, 중대한 과실로 오손, 파손, 멸실 하였을 경우
 -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
 -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 - 입소계약서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6. 입소자나 보호자의 계약해제
 -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- 입소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입소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
-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보호자가 입소자들 앞에서 시설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동이나 난동을 부렸을 때

■ 시설물 이용 수칙

- 면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.
- 면회 시 각 층 출입문이 닫혀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시기 바랍니다.
- 음식물 반입 시 담당 직원과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소한 어르신의 안전과 관련하여 떡, 사탕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.
- 요양원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면회객 스스로 질서유지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 요양원은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.
- 요양원 이용 중 건물 파손 및 기물 훼손시 변상하셔야 합니다.
-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면회객 모두 청결한 요양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항은 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시설급여

□ 이용료 부담금

입소자에 대한 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으며, 사전에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가.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(2022년 기준)

구 분	1일 급여	총 액 (30일 기준)	본인부담금			비급여
			일반 급여비용(20%)	감경40% 급여비용(12%)	감경60% 급여비용(8%)	
1등급	74,850원	2,245,500원	449,100원	269,460원	179,640원	아래표 참고
2등급	69,450원	2,083,500원	416,700원	250,020원	166,680원	
3,4,5등급	64,040원	1,921,200원	384,240원	230,540원	153,690원	

※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변경시 적용일부터 변경 적용함

나. 비급여 항목: 대상·자격 구분없이 전액 입소자 납부(30일 기준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)

항 목	식재료비	간식비	상급침실료 (1인실)
월금액 (1일 기준)	234,000원 (2,600원X3식X30일)	간식 오전, 오후 무료 제공	없음

※ 계약기간 중 금액변경시 변경적용 될 수 있음

■ 시설 총 설비구조 현황

구분	사무실	침실	요양보호사실	상담실	물리치료실	자원봉사자실	특별실	간호사실	프로그램실	화장실	목욕실	식당조리실	세탁/건조실
총51실	1	24	1	1	1	1	1	1	5	5	5	1	4

■ 층별 설비구조 현황

구분	설비 및 구조내역	
	구분	면적(m ²)
공용면적	지하2층기계실/1층주차장	453.58
지하1층	주방, 식당, 간호사실, 물리치료실, 기타	276.72
2층	사무실, 상담실, 침실, 프로그램실, 화장실, 목욕실, 기타	467.27
5층	침실, 목욕실, 화장실, 프로그램실, 요양보호사실, 세탁/건조실, 기타	254.18
6층	침실, 목욕실, 화장실, 프로그램실, 린넨실, 세탁/건조실, 기타	254.18
7층	침실, 목욕실, 화장실, 프로그램실, 자원봉사자실, 세탁/건조실, 기타	254.18
9층	침실, 목욕실, 화장실, 프로그램실, 특별실, 세탁/건조실, 기타	254.18
총 연면적		2,214.29

■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

◇ 복지시설영업배상책임보험

삼성화재해상보험, '21년 03월 18일 ~ '31년 03월 18일

◇ 화재보험

롯데손해보험, '19년 11월 07일 ~ '24년 11월 07일

